

## 5.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□ 개정이유

- 소비자보호법이 법률 제5748호('99. 2. 5)로 개정됨에 따라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인 소비자단체와 근로자단체등의 활동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
-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제고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상·하수도요금에 대한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,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시행으로 변동되는 소비자 요금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제고 및 경영을 개선코자 하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-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보수집, 제공을 위한 유급물가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제3항)
- 소비자 상담실의 유급상담원은 상담실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두도록 하고 시장이 위촉하며 보수는 규칙에서 정하도록 함(안제10조제3항)
-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소비자 단체외의 소비자 협동조합 등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(안 제11조제1항)
-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소비자 피해 보상기구 설치 의무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삭제(안 제19조제1항, 제2항)

- 공공요금 결정에 소비자 및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22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학계·법조계·언론계·소비자단체·근로자단체·경제인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1조제1항, 제3항)
-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공공요금 심의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공공요금중 상·하수도 요금의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기능을 삭제하고, 시 관여 요금중 정부의 원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되는 소비자 요금은 심의를 생략토록 함(안 제32조제2항, 제3항)
-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중요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4조제4항)

## □ 검토의견

- 지방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 소비자 및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확보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
-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한 물가정보수집 제공을 위한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과 유급상담원을 5인 이내로 하여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국가시책의 수행에 대한 보상이란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되나 새로운 단체 보조나 인건비등의 예산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심의가 요구되며
- 조례안 제11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과 제2항 등의 삭제와 제31조 및 32조, 34조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

#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관련<br>490 |
|----------|-----------|

제안년월일 : 1999년 7월 24일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

위원장 우종호

## 1. 수정이유

- 소비자보호 및 시민소비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, 심의, 조정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원중에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하여 주민대표로서 의견수렴의 기능을 수행토록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위원회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 (안 제31조)

## 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파주시소비자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1조제3항 “위촉직위원은” 다음에 (“유관기관” 앞에) “지방의회의원”  
을 삽입한다.

## 수 정 안 대 비 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1조(위원회구성)<br>③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<br>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유<br>관기관·사회단체장 또<br>는 간부급 인사와 경제<br>분야에 학식과 경험이<br>풍부한 전문인사중에서<br>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<br>다. | 제31조(위원회구성)<br>③-----위촉<br>-----<br>직위원은 유관기관·사<br>회단체장 또는 간부급인<br>사와 학계·법조계·언<br>론계·소비자단체·근로<br>자단체·경제인단체에서<br>추천하는 대표중에서 시<br>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. | 제31조(위원회구성)<br>③-----위촉<br>-----<br>직위원은 지방의회의원<br>· 유관기관·사회단체장<br>또는 간부급인사와 학<br>계·법조계·언론계·소<br>비자단체·근로자단체·<br>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<br>는 대표중에서 시장이<br>위촉한 자로 한다. |

# 서 면 답 변 자 료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질문의원 | 이 하 용 의원                        | 답변부서 | 건설국 건설과 |
| 질문제목 | 350번지방도(오현-웅담) 확·포장공사 도로결정 선형상황 |      |         |

## □ 질문요지

- '92년 10월 복지회관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과  
'92년 9월 24일 도로결정고시와 공사 발주가 같은 시기이고 그 당시 도로  
선형을 바로잡지 않고 그냥 공사를 시행 했는지

## □ 답변자료

- '92년 10월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된 것은 복지회관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 
350번지방도 확·포장공사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 된 것이며,
- '92. 9. 24 도로구역결정고시와 함께 공사발주는 통상적으로 동시에 시행되고  
있으며 그 당시 선형은 파주시법원읍복지회관 부지를 일부 포함한 현재의  
도로 상황과 같습니다.

답변자 직위 : 건설국 건설과장

성명 : 윤 병 규

